

필수유지업무 유지·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하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|      |     |      |
|------|-----|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|
|------|-----|------|

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재심신청인 | [ ] 노동조합 | [ ] 사용자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
|      |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|----------|
| 노동조합 | 조합명 | 대표자      |
|      | 소재지 | (전화번호: ) |

|     |      |          |
|-----|------|----------|
| 사용자 | 사업장명 | 대표자      |
|     | 소재지  | (전화번호: ) |

초심사건

○○지방노동위원회 . . . 결정, 사건번호

초심결정서 수령일

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(별지 작성 가능)

위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발생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○○지방노동위원회가  
한 필수유지업무 유지·운영 수준 등의 결정은 위(별지)에 적은 이유와 같이 [ ] 위법한 (의한) 것이라고  
[ ] 월권에  
인정되므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42조의4제5항,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
제8호에 따라 재심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재심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중앙노동위원회 귀하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※ 비고: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기 바랍니다. | 수수료<br>없음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